

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인 성명 : 전광석

주 소 : 부천시 오정구 내동 215-1번지

나. 소개의원 : 김삼중 의원

다. 접수일자 : 1999. 9. 20

라. 회부일자 : 1999. 9. 27

마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전설교통위원회(99. 10. 8) 상정 및 의결

2. 청원요지

- 1967년~1973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거주자의 주택을 철거하면서 사업시행청에서 현재의 거주지인 체비지에 이주토록 하였으면서도 1996년부터 공시지가에 기준한 체비지 대부료 부과, 징수는 부당
- 현재의 체비지 거주자는 영세서민으로 대부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체비지 입주자가 자립의 터를 찾을 때까지 또는 시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간의 대부료 부과를 취소하고 부과를 상당기간 유예하여 줄 것을 요하는 청원임.

3. 취지설명요지

(취지설명 : 김삼중 의원)

- 1967년부터 1973년까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거주자 주택 철거로 시행청에서 현재의 체비지에 이주토록 하였으면서도 1996년 이후부터 공시지가에 기준한 대부료 부과, 징수로 영세서민의 생활에 불편 초래
- 체비지 거주자는 영세서민으로 생활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이주계획 및 대부료 납부 또는 매입계획이 전무한 실정이고
- 특히, 근 30여 년 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건물보수가 불가능하므로 지붕은 비가 새어 비닐로 덮어놓고, 진입로는 포장이 안 되어 비가 오면 다니기가 어려우며 담장이나 벽면은 낡아 무너지고 있으나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보수가 불가능하여 주변여건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며,
- 최근의 경제 여건과 개개인의 생활 형편이 어려우므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체비지 입주자가 자립의 터를 찾아갈 수 있기까지, 또는 시차원의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그간의 대부료 부과를 취소하고 상당기간 유예하여 줄 것을 청원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청원인의 청원내용이 사실인가?	○ 청원내용처럼 약 3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의 소유권이 없어 환자를 못 받아 거주할 곳이 없던 주민에게는 체비지를 내주고 이주토록 하였음.
○ 청원인이 요구하는 현재까지의 부과된 대부료를 취소해 줄 수 있는가?	○ 체비지 거주자 중 일부는 대부료를 납부하였기에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안으로 불가능함.

- | | |
|---|---|
| <p>○ 청원인들은 체비지 이주시 건물에 대한 보상 없이 체비지 이주권만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?</p> | <p>○ 상당한 기간이 지나 그 당시의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인은 할 수 없으나,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상 없이 체비지로 이주만 시키지는 않았을 것임.</p> |
|---|---|

5. 심사결과

- 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
※ 부당한 체비지 대부분부과 징수에 대한 청원 의견서 1부

의 견 서

의안번호	215
------	-----

건 명	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에대한청원		
청 원 인	주 소	부천시 오정구 내동 215-1번지	
	성 명	전광석	
소개의원	김삼중 의원		
소개년월일	1999. 9. 20	처리년월일	제7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(99. 10. 12)

- 동 사항은 95년 6월 19일 부천시조례 제1358호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·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부천시가 부과하고 있는 체비지 대부료로서
- 현실적으로 대부분 30여 년 된 구옥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, 수해피해, 구획정리사업의 시책에 의해 이주한 영세서민이 체비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, 점유포기는 물론 납부능력 한계로 체납만 누적되는 등 점유자에게 심리적 고통만 가중하고 있으므로
- 시장은 이 시점에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·징수조례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례를 완전 폐지하거나 시의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향후 대부료부과 유예기간을 두어 체비지 점유자의 자활의욕을 복돋아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

1999년 10월 12일

부천시의회 의장